NFT(Non Fungible Token)을 둘러싼 최근 이슈와 저작권 쟁점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전재림 선임연구원

Ⅰ. 들어가며

최근 언론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기술 관련 이슈를 언급하면 대표적으로 메타버스(Metaverse)[1]와 NFT(Non 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를 들 수 있다. 이 중 NFT는 2017년 나온 블록체인 기반 게임인 '크립토키티'를 통해 대중화되었는데, 관련 시장 규모가 2019년 1억4155만달러에서 2020년 3억380만달러로 폭등[2]하는 등 급격하게 관련 시장이 성장해오고 있다. 이러한 시장 흐름에 따라 Microsoft, NIKE 등 다양한 기업들이 NFT 시장에 뛰어들고 있으며, 메타버스에서 이러한 NFT를 거래에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제기[3]되고 있다. 한편, 저작물 시장에서는 NFT가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특성 때문에 주로 미술품 영역의 거래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 이중섭·김환기·박수근 작가의 작품을 NFT로 발행하고 이를 온라인 경매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4] NFT 발행 및 경매를 추진한 업체에게 저작권이 없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경매를 추진하는 측에서는 저작권을 양도받았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논란이 커지자 결국 경매를 잠정 중단하게 되었다.[5]

NFT는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로 신뢰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다른 토큰과 달리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희소성, 유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로 알려져 있는데 왜 이런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을까? 이하에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NFT가 어떻게 저작물 거래에 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 저작권 쟁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1)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초월(meta)과 세계·우주(universe)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 세계를 뜻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반적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생활형·게임형 가상 세계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메타버스 시장은 계속 증가해오고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며 관련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위키백과:메타버스, https://ko.wikipedia.org/wiki/%EB%A9%94%ED%83%80%EB%B2%84%EC%8A%A4(2021.6.2.최종방문)>.
2) 이지현, 암호화폐 다음은 NFT? 블록체인산업은 차세대 시장 NFT로 향한다, KOTRA,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8333(2021.6.2.최종방문)>.
3) 플레이댑, NFT 활용한 '메타버스' 게임 시장 '정조준',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81370(2021.6.7.최종방문)>.
4) 이중섭·박수근·김환기그림 NFT, 위작논란·저작권 문제로 '시끌',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1/06/529003/(2021.6.2.최종방문)>.

Ⅱ. NFT를 이용한 저작물 거래

1. 개 요

NFT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6]을 의미한다. 디지털 자산의 일종으로 디지털 파일의 소유권 등을 블록체인상에 저장하여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하다.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은 다른 코인과 1:1교환이 가능한 것과 같이 대체가 가능하나, NFT는 고유한 식별값이 입력되어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면허증, 증명서 등 진본성이 중요시 되는 것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작품의 위작논란이 많은 미술계에서 NFT가 많이 활용되었는데, 올해 3월 디지털 아티스트인 마이크 윈켈만(활동명 beeple)의 'The First 5000 Days'인 작품이 뉴욕 크리스티 경매소에서 6천9백만달러(한화 약 781억)에 판매되며 화제가 된 바 있다.[7]

한편, 이러한 기술은 복제가 손쉬운 디지털 세상에서 '디지털 원본'이라는 개념을 만들게 하여 새로운 미술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8]

2. 저작물의 NFT 발행

NFT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에서 발행되고 거래되는 표준 인터페이스인 ERC(Ethereum Request for Comments)-721를 활용하고 있다. NFT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나,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중개 사이트(마켓 플레이스)[9]를 통해 만드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NFT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품(저작물), 코인[10], 코인 지갑[11]이 필요하다. 저작물을 NFT로 만드는 것을 민팅(minting)[12]이라고 하는데, 이때 가스(gas)라는 수수료가 필요하며, 이 수수료는 코인으로 지불[13]된다. 이 과정에서 NFT를 판매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마켓 플레이스 사이트에 저작물을 업로드해야 한다.

---

5) '이중섭·김환기·박수근' NFT 경매 중단...'저작권·진위' 논란 사과,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02_0001462404(2021.6.2.최종방문)>.
6) 독자적인 플랫폼(메인넷)을 구축해서 이용되는 것은 코인으로 불리고, 독자적인 플랫폼 없이 다른 코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토큰이라고 한다.
7) Beeple sold an NFT for $69 million, <https://www.theverge.com/2021/3/11/22325054/beeple-christies-nft-sale-cost-everydays-69-million(2021.6.4.최종방문)>.
8) 조작할 수도 없고, 분실 위험도 없고… '디지털 원본' NFT 시장 급팽창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1/03/19/4DV3MH7R65EEJKWOXGWTLSY5TI/(2021.6.4.최종방문)>.
9) Valuables, Rarible, OpenSea, Nifty Gateway, Super Rare, Makers Place 등이 있다.
10) 이더리움, 질리콰(zilliqa)와 같은 가상자산를 말한다.
11) 가상자산를 저장하거나 이를 거래에 이용할 수 있는 지갑을 말한다. 대표적인 가상자산 지갑 사이트로 metamask, Trezor One 등이 있다.
12) 민팅(minting)이란 디지털 저작물을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거쳐서 NFT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
13) 사전에 지불되는 경우도 있고, 판매 후 지불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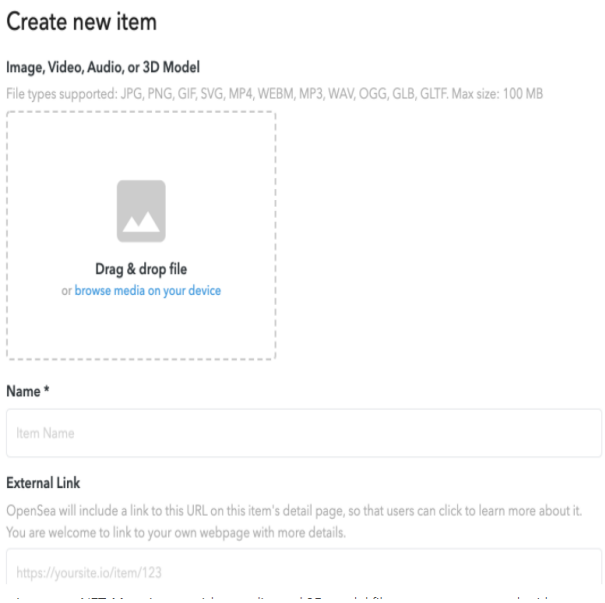

〈그림1 opensea 사이트에서의 저작물 업로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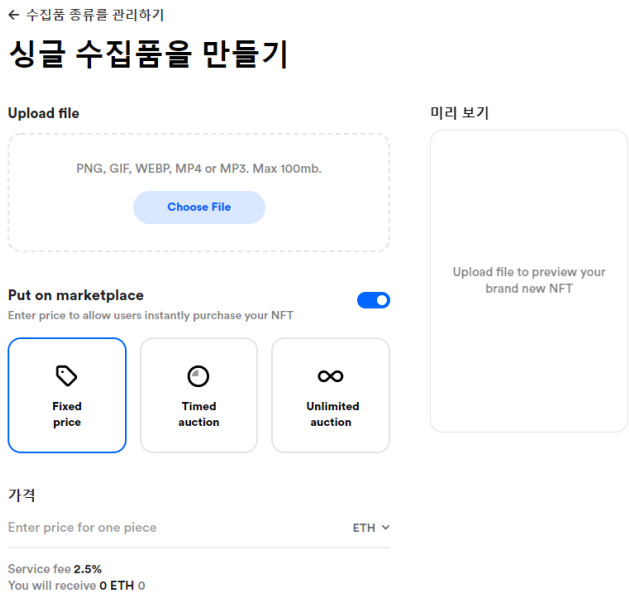

〈그림2 rarible 사이트에서의 저작물 업로드 과정〉

이렇게 민팅하는 것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속도에 따라 다른 가스 수수료(gas fee)를 지불하게 된다. 이 가스 수수료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으나, 그 가격이 너무 낮을 경우 전송이 실패할 수 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토큰을 네트워크로 보내거나 이더리움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등의 것을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저작물을 NFT와 연결시키는 것도 이러한 트랜잭션의 하나로 전송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비용이 들어간다.

한편, 이 과정에서 세부적인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작품 이름·작품 설명·고품질 이미지 링크(판매할 작품의 원본 작품이 있다면 그 곳의 링크)·작품이 판매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로열티 비율(예시. 재판매 금액의 10%), 카피 수(에디션 개념으로 해당 작품 시리즈로 몇 개를 발행할 것인지 의미)를 입력할 수 있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저작자 이름·창작일을 기재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저작권도 함께 양도할 것이지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모든 내용을 기재하면 업로드와 함께 민트가 이루어지는데, 지불한 가스 수수료값에 따라 시간과 성공여부가 달라진다.

---

5) '이중섭·김환기·박수근' NFT 경매 중단...'저작권·진위' 논란 사과,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02_0001462404(2021.6.2.최종방문)〉.
6) 독자적인 플랫폼(메인넷)을 구축해서 이용되는 것은 코인으로 불리고, 독자적인 플랫폼 없이 다른 코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토큰이라고 한다.
7) Beeple sold an NFT for $69 million, 〈https://www.theverge.com/2021/3/11/22325054/beeple-christies-nft-sale-cost-everydays-69-million(2021.6.4.최종방문)〉.
8) 조작할 수도 없고, 분실 위험도 없고… '디지털 원본' NFT 시장 급팽창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1/03/19/4DV3MH7R65EEJKWOXGWTLSY5TI/(2021.6.4.최종방문)〉.
9) Valuables, Rarible, OpenSea, Nifty Gateway, Super Rare, Makers Place 등이 있다.
10) 이더리움, 질리콰(zilliqa)와 같은 가상자산를 말한다.
11) 가상자산를 저장하거나 이를 거래에 이용할 수 있는 지갑을 말한다. 대표적인 가상자산 지갑 사이트로 metamask, Trezor One 등이 있다.
12) 민팅(minting)이란 디지털 저작물을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거쳐서 NFT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
13) 사전에 지불되는 경우도 있고, 판매 후 지불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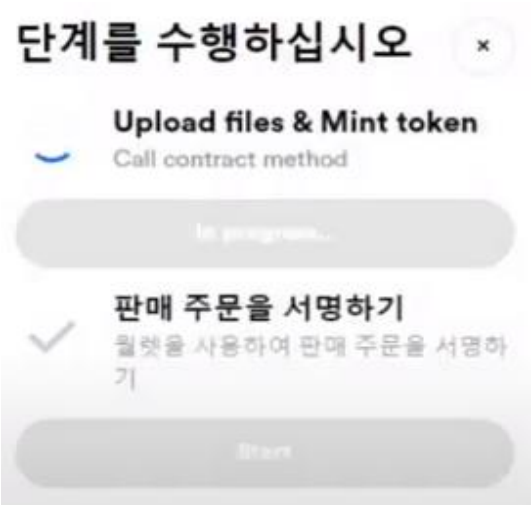

〈그림3 파일 업로드와 minting하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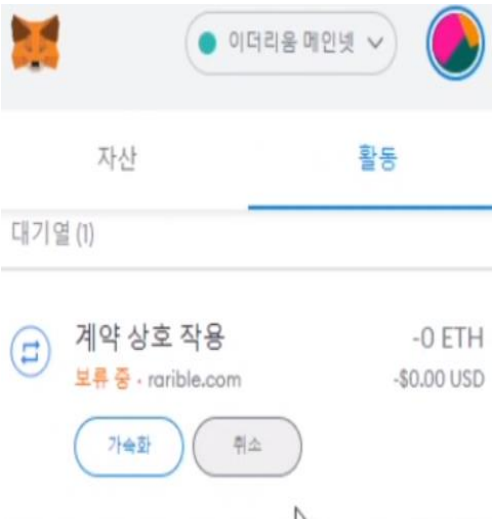

〈그림4 트랜잭션 하는 과정〉[14]

3. NFT를 이용한 저작물 거래

이렇게 만들어진 NFT는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가 가능해지며, 구매자는 경매에 참여하여 이를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생성된 NFT는 생성한 마켓플레이스가 아닌 다른 마켓플레이스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 판매를 개시하면 마켓플레이스에 아래와 같이 업로드한 이미지가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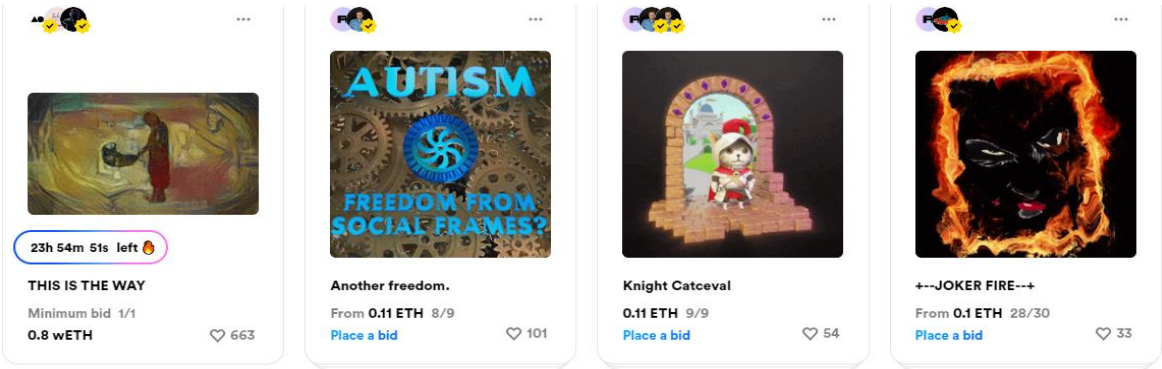

〈그림5 rarible 사이트에서의 판매화면〉

위의 그림을 설명하면, ETH 앞에 있는 것이 판매 금액이며, 8/9 라고 기재된 것은 해당 작품은 총 9개의 에디션이 있는데 그 중 8번째 작품이라는 뜻을 의미한다. 실제 미술작품들이 다양한 에디션이 있는 것처럼, NFT도 각 작품마다의 고유성이 있어 에디션 별로 판매가 이루어진다. 에디션 별로 가격이 달라지며 당연히 1번째 에디션이 가장 비싸다.

마켓플레이스에서 NFT 구매가 이루어지면 해당 NFT에 거래 내역이 기재되고 구매자는 이를 소유하게 된다. NFT에 기록된 모든 거래 내역은 Etherscan[15]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다.

14) 파일이 업로드 되면 민팅이 진행되며 보류중이라고 알림이 뜨며,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으면 가속화 버튼을 눌러 추가 가스비를 지불하면 된다.
15) Etherscan Non-Fungible Token Tracker<https://etherscan.io/tokens-nft(2021.6.4.최종방문)>.
16) https://ipfs.io/ipfs/QmYN99ycFoM6ERnA5TBpc3w7Le9QpGMdDvxMNbixuCsztM/metadata.json(2021.6.4.최종방문).

한편, NFT에는 저작물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메타데이터만이 기재되어 있다. 메타데이터에는 작품명, 계약조건, 작품 세부 내역, 이미지 링크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16] 따라서 NFT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저작물이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

{"name":"Promise","description":"A new Jacques Greene song, 'Promise'₩nThis NFT represents not only a 1of1 AV, but the publishing rights to the song upon its release, in perpetuity. ₩n₩nAs we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art on the chain and the promise of web3, we can maybe begin to let go of old systems.₩n₩nThis platform is a promise. You can buy the copyright here. In purchase you will own the publishing to the song, but I reserve the right to approval. That' s the promise.₩n₩n1920 x 1920₩n6 secs₩n","image":"ipfs://ipfs/QmSYxc4PbrupTLv3wkNXpBYcdk5M₩XDwSqnEC1orSPTuli/nft.mp4"}

〈그림6 NFT 경매플랫폼인 Foundation에 업로드된 한 작품의 메타데이터〉

Ⅲ. NFT 거래에서의 저작권 쟁점

1. NFT 거래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위에서 살펴본 NFT 거래 과정에서 어떠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NFT는 메타 데이터로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17] NFT 자체의 거래에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NFT로 민팅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마켓플레이스는 해당 작품을 업로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작권자 아닌 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업로드할 경우 이는 전송권(또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오프라인 저작물을을 NFT로 만들기 위해 디지털화 하는 경우라면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작가명을 저작자가 아닌 타인으로 기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듯 NFT 거래 과정에서 저작물이 이용된다면 해당 디지털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아닌 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 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아야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2. 무권리자의 NFT 민팅에 따른 문제점

가장 이상적인 NFT 거래는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거래 조건을 정하여 NFT화 시키고 이를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품을 NFT로 민팅하는 것은 특별한 제한이 없기에[18] 저작권자 아닌 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민팅하는 것도 가능하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디지털 이미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를 민팅하여 판매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를 구매하여 이용한 자가 의도치 않게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다.

17) 위의 예시는 메타데이터에 저작물이 없는 경우만을 들었으나, 디지털원본 작품 또는 사본이 블록체인에 직접 업로드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블록체인에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비용(가스)가 상당히 고가(대략 1키로바이트 업로드시 약 13달러가 필요)이므로 그 경우는 많지 않다〈https://medium.com/coinmonks/storing-on-ethereum-analyzing-the-costs-922d41d6b316,(2021.6.7.최종방문)〉.

최근 발생한 이중섭·김환기·박수근 작가 작품의 NFT 발행 이슈도 작품을 민팅하는데 있어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였다. 물론, 판매자가 권리가 있다고 믿고 구매한 구매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어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사실 자체로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무권리자의 NFT 민팅 문제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 등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는 저작물들도 NFT화 시켜서 판매하는 것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19],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을 NFT화 해서 이를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사회윤리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NFT화 시키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검증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일반적인 저작물도 진정한 권리자를 입증하는 것이 힘든 만큼 그 절차가 과도해서는 안된다. 이 점에서 현재 법상 추정력을 두고 있는 저작권 등록제도와의 연계가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퍼블릭 도메인의 권리 주장에 따른 문제점은 칠레 저작권법을 참조하여[20],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NFT와 저작물 비연동에 따른 문제점

NFT는 메타데이터만 저장되어 있어, NFT를 저작물 거래에 따른 영수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21] 이렇듯 NFT는 저작물의 위치, 설명 등만 기재되어 있어서 NFT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저작물이 직접 전송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물은 NFT 메타데이터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접근 가능할 뿐이다. 이렇게 원 저작물의 존재와 NFT 거래간에는 간극이 있는데, 이는 NFT 거래를 저작물 거래의 유효성으로 치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 문제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NFT의 법적 성질과 그 거래의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NFT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중 하나로 그 법적 성질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대법원 형사판결에서 비트코인을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판시하여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으로 본 사례가 있기는 했으나,[22]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모호함[23]이 있다.

---

18) 특정 거래소는 검증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오픈 마켓플레이스는 이러한 과정이 없다.
19) Global Art Museum이라는 단체는 암스테르담 국립미술박물관 등의 16세기 유명 그림등을 NFT화 하여 논란이 되었다.<https://news.artnet.com/art-world/global-art-museum-nfts-1953404(2021.6.4.최종방문)>.
20) 칠레 저작권법
제 80 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침해의 경우 25UTM 이상 500UTM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공공저작물 또는 공동문화유산의 저작자명을 알면서 허위로 복제, 배포 또는 공표 한 자
② 공공저작물 또는 공동문화유산을 독점하거나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
③ 보호저작물의 실연 또는 공표에 대한 보상금 지불의 의무를 가진 자가 해당하는 실연대장의 작성을 누락한 경우
21) Buying a pink NFT cat was a crypto nightmare, <https://www.bbc.com/news/technology-57273904(2021.6.6.최종방문)>.
22)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23) 디지털 가상자산에 대해 민법상 물건이라는 견해, 금전이라는 견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라는 견해 등 이견이 있다(전우정,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과 규제개선 방안-민법상 물건, 금전, 자본시장법상 증권인지 여부 검토, 금융법연구 제16권제1호, 2019, 147면~199면:최단비, 가상화폐의 법적성격 및 거래소 이용자의 권리 구제방안, 법학연구 제20권제2호, 2020, 597~618면).

한편, 2021년 3월 25일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은 가상자산에 대해 규정[24]하였으나, 해당 법은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내용으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그 법적 성격과 별개로 현실적으로 가상자산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금법 뿐만 아니라 상속세법, 소득세법 등에서 간접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도와 매수 등 거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NFT의 거래는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NFT 거래가 유효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물 거래와 동일시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NFT의 거래는 메타데이터만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유효한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계약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호하다. 또한, 저작물의 물리적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링크가 제공되는 형식이므로 급부의 불안정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링크는 영속성이 없는 만큼 구매 후 저작물이 사라질 수도 있고, 링크가 사라진 NFT를 구매할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티스트들은 에디션 구매자에게 NFT와 별도로[25] 저작물을 보내기도 하고, IPFS(InterPlanetary File System)[26]를 이용하여 파일을 저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는 만큼 법적 불안정성이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양도를 법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저작권법 제54조의 양도 등록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4. 기타 저작권 쟁점

상기 언급된 문제점 외에도 유럽의 경우 NFT 거래가 정보사회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 영역에서의 조화를 위한 지침[27](이하 '정보사회화 지침') 제4조의 배포권에 따른 권리소진 대상이 되는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NFT의 거래를 저작물 배포행위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디지털 복제물에 대해서는 권리소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CJEU의 판례[28]인 만큼 NFT에 따라 권리소진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29]

그리고 NFT는 재판매할때마다 재판매금의 일정한 로열티를 원판매자에게 지급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는 추급권(droit de suite)과 유사한 내용으로 NFT거래가 활성화되면 실질적으로 추급권이 도입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30]

특히, 저작물 및 행사범위 등의 제한 없이 추급권을 도입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24)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특금법 제2조제3호).]
25) 미국 락그룹 Linkin Park 의 랩퍼인 Mike Shinoda은 3월에 NFT로 발매한 싱글 앨범 'Happy Endings'의 낙찰자인 10명에게 사인을 한 후 오프라인으로 보내기도 했다.
26) 토렌트 등 p2p 방식으로 데이터의 내용을 변환한 해시값을 이용하여 여러 컴퓨터에 분산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27)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28) European Court of Justice, 19 December 2019, C-263/18, ECLI:EU:C:2019:1111.
29) 유럽의 경우도 원본 예술 저작물의 재판매 권리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1/8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01 on the resale right for the benefit of the author of an original work of art)과의 정합성이 논의되고 있다.
30) SIAE, Italy's largest collective management organisation, represents authors' rights as digital assets managed on the Algorand blockchain,<https://www.algorand.com/resources/news/siae-launches-4-million-nfts-on-algorand-for-creators(2021.6.7.최종방문)>.

Ⅳ. 나가며

이러한 다양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NFT를 이용한 저작물 거래는 현재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수의 창작자들이 NFT 발행을 위해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메타버스 등 다른 기술과 맞물려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저작권신탁단체에서도 NFT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지난 3월 이탈리아 신탁단체인 이탈리아 작가출판사협회(Società Italiana degli Autori ed Editori, SIAE)는 알고랜드 블록체인 플랫폼과 협업하여 95,000명 이상의 회원들을 위해 400만개 이상의 NFT를 출시했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31] 보도자료에 나와있지 않아 SIAE가 구체적으로 NFT를 운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불분명하나, 성공적으로 운용될 경우 하나의 새로운 신탁모델이 될 수도 있다. 이렇듯 NFT의 등장은 기존 저작권 제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NFT를 이용한 저작물 거래의 제도권 편입 문제는 다른 가상자산 시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전체 가상자산 관련 제도 및 시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1) SIAE, Italy's largest collective management organisation, represents authors' rights as digital assets managed on the Algorand blockchain,<https://www.algorand.com/resources/news/siae-launches-4-million-nfts-on-algorand-for-creators(2021.6.7.최종방문)>.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김이수, 비트코인의 사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59(4), 2018

박윤석, [이슈리포트] 전자책의 권리소진 적용여부(CJEU C-263/18 판결), 2020

백경태, 블록체인 기술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고- 저작권 분야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계간저작권 겨울호, 2019

전우정,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과 규제개선 방안-민법상 물건, 금전, 자본시장법상 증권인지 여부 검토, 금융법연구 제16권제1호, 2019

정진근, 블록체인: 저작권제도에서의 활용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소고, 계간저작권 겨울호, 2018

최단비, 가상화폐의 법적성격 및 거래소 이용자의 권리 구제방안, 법학연구 제20권제2호, 2020

2. 참조 판례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참고문헌

3. 기타

https://ko.wikipedia.org/wiki/%EB%A9%94%ED%83%80%EB%B2%84%EC%8A%A4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8333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1/06/529003/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02_0001462404
https://www.theverge.com/2021/3/11/22325054/beeple-christies-nft-sale-cost-everydays-69-million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1/03/19/4DV3MH7R65EEJKWOXGWTLSY5TI/
https://etherscan.io/tokens-nft
https://ipfs.io/ipfs/QmYN99ycFoM6ERnA5TBpc3w7Le9QpGMdDvxMNbixuCsztM/metadata.json
https://medium.com/coinmonks/storing-on-ethereum-analyzing-the-costs-922d41d6b316
https://news.artnet.com/art-world/global-art-museum-nfts-1953404(
https://www.bbc.com/news/technology-57273904
https://www.algorand.com/resources/news/siae-launches-4-million-nfts-on-algorand-for-creators
https://rightofpublicity.com/brief-history-of-rop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3110590795797
https://www.etoday.co.kr/news/view/1883113
https://www.fnnews.com/news/202104081819421594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signs-legislation-establishing-right-publicity-deceased-individuals-protect
https://ent.sbs.co.kr/news/article.do?article_id=E10010169171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8333